



제 1124 호

2013년 8월 16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3- 12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 보상계획 열람 2
- 공고 제2013- 12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
- 공고 제2013- 12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6
- 남동구 보건소
○ 공고 제2013- 14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21

고 시

- 고시 제2013- 73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23
- 고시 제2013- 74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25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08호

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와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고잔동 소1-5호선)
 - 나. 명 칭 : 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B=10.0m, L=78.5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98-12번지 일원
5. 보상시기 : 2013. 10월부터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가. 토지보상 : 고잔동 298-3번지 외 1
 - 나.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13. 8. 13 ~ 8. 28(15일간)
11. 기타사항
 -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나.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0)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장물 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장 물 현 황					비고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이용사항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고잔동	531-3	컨테이너하우스	3.0×6.0 (1동)	사무실 및 창고	정우기계		
2	고잔동	531-3	컨테이너하우스	3.0×9.0 (1동)	사무실 및 창고	정우기계		
3	고잔동	531-3	컨테이너하우스	3.0×9.0 (2동)	사무실 및 창고	황소비철기업		

☐ 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고잔동	298-10	전	18.0	18.0	공	인천광역시남동구				
2	고잔동	298-11	도	4.0	4.0	공	인천광역시				
3	고잔동	298-3	전	2.0	2.0	백*현	인천 남동구 고잔동 302-4				
4	고잔동	298-2	전	104.0	104.0	공	인천광역시남동구				
5	고잔동	298-12	도	4.0	4.0	공	인천광역시				
6	고잔동	298-4	전	2.0	2.0	백*현	인천 남동구 고잔동 302-4				
7	고잔동	586-28	도	4,436.0	18.0	국	건설부				
8	고잔동	531-3	도	1,656.0	737.0	공	인천광역시남동구				
합 계				6,226.0	889.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12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초로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으로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의 활력을 불어 넣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론,

나. 현대 도시생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을과 마을 그리고 소속 구성원간의 상호교류와 소통 부재로 인한 병폐현상 등을 해결해 건강한 지역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다.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32, FAX 453-2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안)- 별첨

※ 이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초로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으로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의 활력을 불어 넣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론,
- 현대 도시생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을과 마을 그리고 소속 구성원 간의 상호교류와 소통 부재로 인한 병폐현상 등을 해결해 건강한 지역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116조의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5. "행복한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마을 환경 개선 및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 만들기 사업

제6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 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마을 만들기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 지정)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계·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8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제10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5. 마을 공동시설 개선사업
6.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7.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워크숍
8.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만들기 주체는 조례 제6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부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중간점검)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 대상에 대하여 추진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인천광역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마을 만들기 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 만들기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2.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4.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공동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속해있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 만들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 만들기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5. 마을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8. 마을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9.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12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복지위원회 기능을 우리구 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구성 인원 및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자원 발굴 등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위원회 기능 변경(안 제3조) :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상담,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동복지위원회 기능을 우리구 여건에 맞게 변경
 - 나.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촉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 구성인원 확대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위촉대상 확대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종사자, 유치원 교사, 자영업자, 기타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위촉대상 범위 확대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희망복지지원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572, FAX 453-25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동복지위원회 기능을 우리구 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구성 인원 및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자원 발굴 등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변경(안 제3조)

-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상담,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동복지위원회 기능을 우리구 여건에 맞게 변경

○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촉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 구성인원 확대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위촉대상 확대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종사자, 유치원 교사, 자영업자, 기타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위촉 대상 범위 확대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 및 상담
3. 복지서비스자원 발굴 및 연계

제4조제1항 중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명 이내”를 “4명 이내”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및 종사자
2. 사회복지·보건의료·법률 분야의 전문가
3.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5. 자영업 또는 기업체 대표자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능) (생략) 1. (생략) 2. <u>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u> 3. <u>사회복지대상자와 후원자(개인, 단체, 사업체 및 각급 공공기관)와의 복지연계</u> 4. (생략)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 및 상담</u> 3. <u>복지서비스자원 발굴 및 연계</u>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u>15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u>3명 이내</u>로 한다. 1. <u>사회복지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u> 2. <u>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및 법률 전문가</u> 3. <u>초·중·고교 교사 또는 대학 교수</u> 4. (생략) 5. <u>기업체 대표자</u> 6. (생략) 7. <u><신설></u> ④ (생략)	제4조(구성) ① ----- -----<u>20명 이내</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4명 이내</u> ---- 1. <u>사회복지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및 종사자</u> 2. <u>사회복지 · 보건의료 · 법률 분야의 전문가</u> 3. <u>유치원 · 초 · 중 · 고교 교사</u> 4. (현행과 같음) 5. <u>자영업 또는 기업체 대표자</u> 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④ (현행과 같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3-14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시설물 멸실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3. 8. 19 ~ 9. 2(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비고
1	유흥 주점	유흥-136	썸(SUN) 노래클럽주점	조 * 청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55, 2층 201호(구월동, 건영프라자)	

4. 처분내용 : 영업허가 취소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가.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나.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3)

다. 청문일시 : 2013. 9. 6(금)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라.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청사 4층 식품위생과

마. 청문주재자 :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식품위생팀 ☎032-453-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7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34번길 11외 1건
2.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2-4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2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가. 도로명주소는 2013. 8. 16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4.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나.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예정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8-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 34번길	11	20091116	복개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3.08.1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복개동로34번길 1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9	20091116	행정구역명(도림동)을 이용하여 도림로로 제 명	2013.08.1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도림로 9번 기초구간 에 위치하여 9를 건물번호로 부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85-10	2013.08.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7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6-2	2013.08.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4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0-4	2013.08.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00번길	21-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4-44	2013.08.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74호

통 · 반 구 역 조 정 결 정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3. 8. 26일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 첨 부 ”

2013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통·반 구역 조정 내역

[논현1동]

□ 통 · 반 구역 조정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622	3,542	2	10	624	3,552	
논현1동	37	231	2	10	39	241	

□ 통 · 반 구역 조정사유 및 내역

○ 논현1동 [2개통 10개반 증가]

통 명	조 정 사 유			조정결과
3통	○ 신규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수 증가로 통·반 분할 및 신설			2개통 ↑
	3통 6개반(76세대)	⇒	- 3통 5개반(256세대)	10개반 ↑
			- 38통 6개반(383세대)	
			- 39통 5개반(272세대)	

□ 통 · 반 조정 세부내역

○ 논현1동 통·반구역 조정 세부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3	1	앵고개로958번길 7 논현동 111 일부	(2)	1	1	앵고개로958번길 7,10,14~16,19 장도로 29-1~2,31,31-1,33-1,35,37 41-1,41-2,43 장도로37번길 14-1,장도로43번길 3 논현동 111 일부	(27)	기존 1~3반
	2	장도로 29-1~2,31,31-1, 33-1,35, 앵고개로958번길 10,14~16,19 장도로37번길 14-1	(18)					
	3	장도로 37,41-1,41-2,43 장도로43번길 3 논현동 111 일부	(7)					
	4	장도로 41,41-1,43-1,49-4, 49-7,49-9,85-28,86-5 소래역로30번길 47-5,47-9 ,47-17,47-21 장도로43번길 4,4-1,10 논현동 111일부 논현동 111-365,368	(35)	3	2	장도로 41,41-1,43-1,49-4,49-7, 49-9,85-28,86-5 소래역로30번길 47-5,47-9,47-17, 47-21 장도로43번길 4,4-1,10 논현동 111일부, 논현동 111-365,368	(35)	기존 4반
	5	장도로 45,49-7,51-1,57 소래역로30번길 47-9, 논현동 111-366,367	(11)			장도로 32,34,36,45,49-7,51-1,57 소래역로30번길 47-9 논현동 111-366,367	(14)	기존 5~6반
	6	장도로 32,34,36	(3)					
		-		4	4	포구로 45 오피스텔 201동 1호~5호	(85)	신설
		-		5	5	포구로 45 아파트 201동 1호~5호	(95)	신설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38	1	-		38	1	포구로 35 아파트 101동 (1호 ~ 4호, 2층 ~ 16층)	(60)	신설
	2	-			2	포구로 35 아파트 101동 (1호 ~ 4호, 17층 ~ 26층) (1호 ~ 3호, 27층 ~ 28층) (2호 ~ 3호, 29층 ~ 34층)	(58)	
	3	-			3	포구로 35 아파트 102동 (1호 ~ 4호, 2층 ~ 19층)	(72)	
	4	-			4	포구로 35 아파트 102동 (1호 ~ 4호, 20층 ~ 30층) (2호 ~ 4호, 31층 ~ 39층)	(71)	
	5	-			5	포구로 35 아파트 103동 (1호 ~ 4호, 2층 ~ 16층)	(60)	
	6	-			6	포구로 35 아파트 103동 (1호 ~ 4호, 17층 ~ 29층) (3호 ~ 4호, 30층 ~ 34층)	(62)	
39	1	-		39	1	포구로 35(오피스텔 104동) (1호 ~ 2호, 2층 ~ 18층)	(34)	신설
	2	-			2	포구로 35(오피스텔 104동) (3호 ~ 8호, 2층 ~ 10층)	(54)	
	3	-			3	포구로 35(오피스텔 104동) (3호 ~ 8호, 11층 ~ 18층)	(48)	
	4	-			4	포구로 35(오피스텔 105동) (1호 ~ 8호, 2층 ~ 10층)	(72)	
	5	-			5	포구로 35(오피스텔 105동) (1호 ~ 8호, 11층 ~ 18층)	(64)	

☐ 통·반 구역 조정 현황

○승인 일자 : 2013.08.26

동명 \ 구분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622	3,542	2	10	624	3,552	
구월1동	36	197	0	0	36	197	
구월2동	41	222	0	0	41	222	
구월3동	25	137	0	0	25	137	
구월4동	31	171	0	0	31	171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20	139	0	0	20	139	
간석3동	49	257	0	0	49	257	
간석4동	39	213	0	0	39	213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3	177	0	0	33	177	
만수3동	23	132	0	0	23	132	
만수4동	32	198	0	0	32	198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31	163	0	0	31	163	
남촌도림동	34	193	0	0	34	193	
논현1동	37	231	2	10	39	241	
논현2동	31	197	0	0	31	197	
논현고잔동	26	161	0	0	26	161	